

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
- 나.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및 침출수를 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주변지역 오염 및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난지도 매립지에 조성된 월드컵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3 (의회동의 및 보고)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(재위탁)을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및 제4조(부산물의 처리 등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2호

○ 민간위탁 추진필요성

- 난지도매립지 포집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운영으로 매립지상에 조성된 월드컵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·운영을 위탁함
- 매립가스(LFG) 성분 중 주요 성분인 메탄가스는 가연성가스로 분류되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, 매립가스 처리시설 운영 시 전문성이 요구됨

다. 위탁 사무의 내용

- 매립가스 포집·이송·정제·소각 등 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, 개량
- 매립가스 포집공·관로 등의 유량, 온도, 압력, 발산 감지 모니터링
-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, 물품 구입, 일반사무의 처리, 그 외 필요한 제반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번지 일대
- 운영일자 : 2002.02.01.~ 현재
- 시설규모
 - 쓰레기매립량 : 91,972천 m^3 , 매립면적 : 2.720천 m^2
 - 포집공 106공, 가스이송관로 14km, 송풍기, 정제기, 소각기 등

○ 주요시설 사진



〈포집공-노을공원 상부〉



〈이송관로〉



〈정제시설〉



〈송풍기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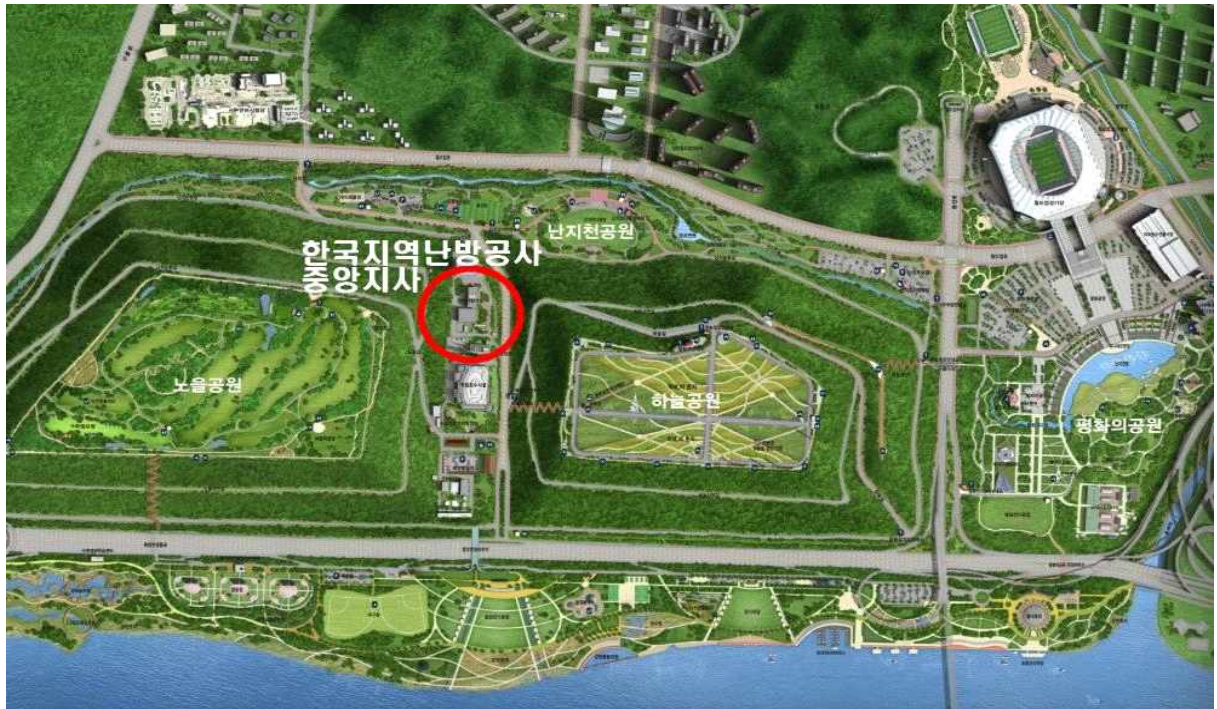


〈소각기〉



〈중앙제어실〉

○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 (2023.2.1. ~ 2026.1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949백만원('23년)
- 산출근거
 - 비정산비(인건비) 789백만원, 정산비(시설유지보수비) 16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'22.7.20.)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제2항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<개정 2019.3.28, 2021.12.30>

-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, 제4조(부산물의 처리 등)

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9.30., 2019.5.16>

2. 서울특별시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
4. 매립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 실적이 있는 자

제4조(부산물의 처리 등)

1.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을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,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7.30, 2012.12.31, 2014.5.14>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., 2014.5.14., 2019.9.26.>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서부공원여가센터 환경보전과 정원걸 (☎ 300-5578)

□ 사 업 명 :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 운영 위탁

□ 위탁기간 : '23. 2. 1. ~ '26. 1. 31. (36개월)

□ 위탁운영비 : 949,546천원

① 비정산비(인건비, 운영비) : 789,546천원 ※ 비용고정

(단위 : 원)

구	분	'22년도	'23년도(안)	증감액	증감율	구성비(%)	비고		
①	직접인 비	기본급	535,792,572	557,100,936	21,308,364	3.98%	70.56%		
		제수당	연장근로수당	16,500,726	16,992,865	492,139	2.98%	2.15%	
			야간근로수당	32,991,802	34,745,080	1,753,278	5.31%	4.40%	
			휴일근로수당	8,948,461	9,424,701	476,240	5.32%	1.19%	
	소 계	594,233,561	618,263,582	24,030,021	4.04%	78.31%			
②	영 비	여비	256,800	144,555	-112,245	-43.71%	0.02%		
		교육훈련비	391,400	283,910	-107,490	-27.46%	0.04%		
		임차료	1,071,225	1,245,795	174,570	16.30%	0.16%		
		우편통신비	1,095,300	1,095,300	-	0.00%	0.14%		
		유인물비	189,409	294,700	105,291	55.59%	0.04%		
		소모품비	1,033,545	1,157,700	124,155	12.01%	0.15%		
		차량유지비	8,500,804	9,552,606	1,051,802	12.37%	1.21%		
		피복비	2,270,362	780,000	-1,490,362	-65.64%	0.10%		
		안전관리비	-	2,079,600	2,079,600	100.00%	0.26%		
		회의운영비	1,000,000	1,000,000	-	0.00%	0.13%		
	소 계	15,808,845	17,634,166	1,825,321	11.55%	2.23%			
합계(인건비+운영비)		610,042,406	635,897,748	25,855,342	4.24%	80.54%			
일반관리비		30,502,120	31,794,887	1,292,767	4.24%	4.03%	(인건비+운영비) x 5%		
이윤		48,040,839	50,076,947	2,036,108	4.24%	6.34%	(인건비+운영비+일반) x 7.5%		
소 계 (위탁운영비)		688,585,365	717,769,582	29,184,217	4.24%	90.91%			
부가가치세		68,858,537	71,776,959	2,918,423	4.24%	9.09%	위탁운영비 x 10%		
위탁비 총 계		757,443,902	789,546,540	32,102,640	4.24%	100.00%			

② 정산비(사업비, 유지보수비) : 160,000천원 ※ 비용변동

- 전력요금 30백만원, 공정안전관리 30백만원, 유지보수공사 등 50백만원, 계량기 및 계측기 검사·구매·성분분석 20백만원, 중대재해 관리 30백만원